

2020년 원광보건대학교 보육교직원 교육일정 안내

2015년부터 보육교직원 일반(원장, 보육교사) 및 승급교육(1급) 교육신청은 **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만 신청**이 가능합니다.

☐ 교육신청기간(해당기간에만 신청 가능)

☐ 보수교육 일정 :

교육과정 (시간)	교육기간	시 간	교육 정원	교 육 비			비 고
				금액	신청기간	납부기간	
교사직무	6/12~6/27 (금,토)	(금)17:30~22:30 (토)09:00~18:50	100	8만원	3/16~3/27	추후공지	
원장직무	7/3~7/18 (금, 토)	(금)17:30~22:30 (토)09:00~15:50	70	8만원	6/1~6/12 [예정]	추후공지	
1급승급교육	5/1~5/30 (금,토)	(금)17:30~22:30 (토)09:00~19:50	150	14만원	3/16~3/27	추후공지	

※ 교육비 납부계좌: 추후 사이트에 승인된 사람에 한하여 문자메시지 별도 안내

※ 납부기간 동안 교육비를 입금하지 않을 시 교육을 못 받을 수 있음

※ 교육비 납부시 **입금자명을 반드시 본의 명의로 입금**

※ 교육희망자수가 40명 미만 시 폐강할 수 있음

☐ 교육장소: 원광보건대학교 보건관 지하1층 세미나실, 보건관 107 강의실

☐ 교육신청방법

- 현 직 :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 ▷ 교육생이 직접 신청
어린이집지원시스템 ▷ 원장님이 대신 신청
- 비현직 :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 ▷ 교육생이 직접 신청

구 분	접속 사이트	신청방법
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 시	보육인력국가자격증포털 (http://chrd.childcare.go.kr)	회원가입-마이페이지-교육관리-교육 신청-교육정보입력-검색-교육선택- 상세보기-교육신청
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보육교직원 신청 시	어린이집지원시스템 (http://cpms.childcare.go.kr)	메뉴보기-교육통합-교육정보입력-검 색-교육선택-상세보기-교육신청

※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원장님이 대신 신청한 교육과정은 개인이 보육인력 국가 자격증 포털에서 조회 및 확인 가능함.

※ **환불 및 입금 · 교육신청 확인을 위해 가급적 개인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함.**

● **교육생의 진행상태 값이 “승인” 일 때만 교육을 들을 수 있음**

※ 교육승인 절차 : 교육대상자 교육신청 → 선정(구·군) → 최종 승인(도)

※ 교육진행상태 확인방법 : [마이페이지]-[교육관리]-[교육진행상태조회]-[검색]

● **교육신청 시 연락처 수정 방법(휴대전화번호 필수 입력)**

- 현 직 : 어린이집지원시스템 ▷ 원장님이 직접 수정

([어린이집운영]-[보육교직원관리]-[교직원선택]-[세부내역])

- 비현직 : 보육인력국가자격증포털 ▷ 교육신청 시 연락처 직접 수정

□ **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**

교육구분			교 육 대 상	교육 시간	비 고
직무 교육	일반 직무 교육	보육 교사	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(승급교육 포함)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	40시간	매 3년마다
		원장	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직무 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	40시간	매 3년마다
	특별 직무 교육	영아 보육	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	40시간	이수하고자 하는 자
승급 교육	2급 승급 교육		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	80시간	이수하고자 하는 자
	1급 승급 교육		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	80시간	이수하고자 하는 자
사전 직무 교육	원장사전 직무교육		영유아보육법 시행령 [별표1]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(일반, 가정, 영아전담,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)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	80시간	이수하고자 하는 자

※ 교육시작일 전까지 보육업무 경력이 충족되어야 함

※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·특별직무 교육대상자임

●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인 ‘보육업무 경력’

-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, 보육교사, 특수교사, 치료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센터의 장, 보육전문요원,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, 원감, 수석교사, 교사로 근무한 경력

※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(1개월 이상)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

※ 주당 30 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,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

※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(‘18년 변경사항)

□ 교육 신청취소 및 교육포기 방법

● 신청취소 : 진행 상태값이 “신청” 일 경우 신청취소

● 교육포기 : 진행 상태값이 “신청” 이후 단계 값일 경우 교육포기
(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에서만 가능)

※ **개인사정으로 교육수강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교육신청 및 교육포기를 하셔야 다음 교육신청이 가능함**

□ 유의사항

● 교육정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

● 교육희망자수가 40명 미만일 경우 교육 개설이 취소될 수 있음

● **교육 취소 시 시작 3일 전까지 통합관리 시스템에 신청취소 및 교육포기 처리를 하지 않을 시 수강료 환불금 없음**

(교육 시작 후 중도 포기 또는 대리 출석으로 취소될 경우 환불금 없음)

● 보육인력국가자격증포털 공지사항에 교육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바람

● 상기 일정은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● 교육신청 등록 중 시스템 오류사항은 1566-0233(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)으로 문의

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(T. 840-1539)